

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대책

(’20. 2. 5. 심사정책과)

1 추진 배경

- 중국發 신종 코로나*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(수입)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

*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

2 지원 내용

-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 등 문제가 있어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

구 분	상세내용
①납기연장·분할납부	▪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※최근2년 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(단기체납, 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)
②관세조사 유예·연기	▪ (관세조사 대상)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▪ (조사 중)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
③환급 특별지원	▪ 환급신청 건 P/L(Paperless) 전환 ▪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(先지급 後심사)

3

업무처리 절차

-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기업 접수 후 납기연장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세관 담당부서에 신청



4

시행 일자

- 2020. 2. 6. 시행 (별도 통보시까지)